

## 화순군공유재산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### 심사 보고

#### 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. 1. 화순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3. 1. 24

다. 상정일자 : 2003. 1. 24

(제1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#### 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 : 재무과장 허길중

나. 개정사유

○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순군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6조(대부료등의 납기)에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의(2002. 10. 22)에서 개정키로 심의, 의결된 사항을 개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8%의 이자를 부여 연4회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단서조항에 신설  
(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)

##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장현범)

- 본 조례안에 별다른 의견 없음.
- 본 개정안의 법규상,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#### 4. 질의답변 요지

“생략”

#### 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#### 6. 심사결과

“원안의결”

첨부 : 화순군공유재산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##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8%의 이자를 분여  
연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 표